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9-02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8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18누7716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등

원고, 항소인 A 주식회사

[redacted]

[redacted]

피고, 피항소인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
[redacted]

제 1 심 판 결 [redacted]지방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구합64291 판결

변 론 종 결 2019. 5. 24.

판 결 선 고 2019. 7. 5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7. 7. 6.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취득세 등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9-02

2,680,035,870원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16년 귀속 취득세 등 317,341,27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.

『원고는 매수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 7년 동안 우선수익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제3자를 매수예정자로 지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수탁회사도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소극적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합리적인 방법과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 또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수탁회사를 상대로 한 공매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무렵에는 사회통념상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달성이 극히 곤란한 사정의 발생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목적달성 할 수 없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, 이후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공매절차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이전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.

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매수예정자나 우선수익자 또는 우선수익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거나, 수탁회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이 달성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9-02

한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수예정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, 수탁회사가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4조에 따른 처분방법으로 예정하고 있는 '우선수익자 또는 우선수익자가 지정한 제3자와의 수의계약'과 '공매처분'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, 원고는 수탁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매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 것일 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.

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으로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, 우선수익자도 매수예정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대여금을 회수하거나 손해가 적게 발생할 때까지 처분을 늦추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도 할 수 없어(원고는 이러한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수탁회사를 상대로 공매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경락대금에서 우선수익자에 우선하여 매매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이행할 수도 있었다),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또한 원고는 수탁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매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어서,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탁계약의 목적달성 불능으로 인한 신탁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.』

2. 결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9-02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.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재영

판사 이승철

판사 김제욱